



기안용지

(전화번호 25. 785)

전결규정 7 조항 전결사항

기호	인사202 -	처리기간	시정		
지행일자	82. 3.	보존년한			
보조기관	인사과장 전 보임1계장	협			
기안책임자	이현구 82. 3.				
경유	수신취참조				
제 목	1. 별정직 공무원 인사 2. 도봉구 총무 215-4072 (82. 2. 26) 호 인사내신은 본 지침을 참조하기 바람.				
수신취	지구 1-17. 해당기관.				관인
063					발송

(답) (임제 202-1527, 1971. 6. 10.)

1. 총무 214-10458(71. 6. 9.)에 대한 회신임.

2. 귀문의 경우

중앙보급사무소의 분소(분소장: 서기관) 및 동소의 과(課) 제도는 귀부의 부령에서 권의상 설치할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정무조

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관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이 규정에 서 말하는 최저단위보조기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귀부의 우정원사무소의 분소와 그 조직상 유사한 기관으로써 동일 분소내에서의 정보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합니다.

37. 별정직공무원 정보에 대한 질의

(문) (국토통일원장관)

당국은 직계상 대부분 별정직공무원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는 아들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관제별령의 분량과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보가 가능할지 여부.
2. 만약 민간직공무원의 정보가 가능하다면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의 정보절차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공의 절차만 받아들여 될 것인지 여부.
3. 만약 별정직공무원의 정보는 가능하나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거할 수 없거나 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동일직

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의 절차는 여하.

(답) (임제 202-2032, 1971. 8. 12.)

1. 총무 290-521(71. 7. 12.)에 대한 회신임.

2. 별정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수업을 위하여 특수한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특별할 필요가 의거 공무원의 임용절차와 다른 직위로의 정보발령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대상자, 임명장 등의 사항은 민간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민간직공무원인사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정보발령을 할 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공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8. 정원개정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한 질의

(문) (국토통일원장관)

직제개정에 따라 당원기획관리실 및 일부 정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개정됨바 이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정원이 개정되어 권정직의 정원은 감소되고 일반직의 정원은 증원된 경우 기왕 별정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당해직위의 일반직의 증원직까지 계속 재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 (임제 250-2088, 1971. 8. 19.)

1. 총무 290-561(71. 7. 31.)에 대한 회신임.

2. 위문과 같이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일반직공무원이 정원상대일때 일반

審査를 기할 再審請求와 5級이하 公務員에 대한 人事相談 및 苦衷의 審査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人事委員會에서 管掌한다.

③ 人事委員會는 任用權者로부터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하고 任用權者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1.4.20 法 3448]

第68條 (社會保障) ① 公務員이 疾病 負傷·廢疾·分曉·退職·死亡 또는 災害를 입은 때에는 本人 또는 그 遺族에게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適切한 給與를 支給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의 福利와 利益의 適切·公正한 보호를 위하여 그 對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第9章 懲戒

(懲戒事由) ① 公務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同懲戒議決의 結果에 따라 懲戒處分하여야 한다.

<改正 81.4.20 法 3448>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規則에 違反할 때
2. 職務上の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 포함한다)에 違反하거나 職務을 怠慢하였을 때

065 063

公務員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② 他法の 적용을 받는 公務員이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 이전의 他法에 의한 懲戒事由는 그 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事由로 이미 懲戒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前의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の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發生한 날로부터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81.4.20 法 3448>

④ 經歷職公務員이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前의 당해 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の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發生한 날로부터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の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4.20 法 3448>

第70條 (懲戒의 種類) 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 및 誹責으로 구분한다.

第71條 (懲戒의 効力) ① 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公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之2를 減한다.

<新設 81.4.20 法 3448>

②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報酬의 3分之1을 減한다

<改正 81.4.20 法 3448>

③ 削除

④ 誹責은 前條에 대하여 訓戒하고 處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 결정(제1항 단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81. 7. 18 대통령 10391)

3 징계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의 사본을 첨부한 별첨제1호 신청서에 의한 징계제부사유장명서를 고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의 방문) ...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극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1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지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③ 시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의 동장과 읍·면장의 징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 7. 18 대통령 10391]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81. 7. 18 대통령 10391]

제15조 (소청절차)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63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8.8 대통령령제67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5.27 대통령령제8139호

이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에 직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1.7.18 대통령령제103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 봉

총무 215-4672

988-1723

82. 2. 26.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인사과장

제목 7급 별정직 공무원 인사내신 (재요청)



1. 총무 215-1105 (82.1.20)호의 관련입니다.

2. 당국 번방위과에 근무하는 다음 직원을 인사 내신하시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신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도봉구 번방위과	별정직 7급	김석두	1943.4.13	81.4.1	동대문구 용두동 129-410

나. 내신사유

- 1)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및 언쟁
- 2) 과 인격단결 저해
- 3)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
- 4) 금전거래가 극히 복잡 (가계수포등 남용)
- 5) 부원외 출장시 허는 등 품위 불손

7급. 끝.



1982 3 2	지	봉	구	청
76	사			
박우성	사			
	관			

